|  |  |  |
| --- | --- | --- |
|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시범** **과세서비스범위 등에 관한 약간** **세수정책의 보충통지**재세[2012]86호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총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시범(이하 “영업세 개정”)상황에 근거하고 연구를 거쳐 유관 세수정책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건축도면 심사서비스, 환경평가 서비스, 의료사고 감정서비스는 “감정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대리기장서비스는 “자문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문인(文印) 청사진 서비스는 “설계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회의, 전시를 조직안배하는 서비스는 “회의전시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항구시설 경영인이 수취한 항구시설 보안비는 “항구부두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웹사이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는 게임에 제공한 네트워크 운영서비스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다.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수취한 관리비용은 택시가 택시회사 소유일 경우, “육로운송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수취하며, 택시가 택시기사의 소유일 경우,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 천진시 동강보세항구 내에 등록된 시범납세인이 제공한 국내화물운송, 창고와 하역 운반서비스에 대해서는 증치세 “납부 후 즉시환급”정책을 시행한다. 3. 2012년 11월 1일부터 평담현(平潭县)에 등록된 시범납세인이 선적서비스 외주업무 중 제공한 과세서비스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4. 2013년 12월 31일 전까지, 영화, TV방송 행정주관부문(중앙, 성, 지시(地市) 및 현급 포함)이 각자의 직능권한에 따라 영화제작, 배급, 방영에 종사하는 것을 비준한 영화그룹기업(成员企业Portfolio company 포함), 영화제작사 및 기타 영화기업이 시범납세인에 속할 경우, 그 영화판권 양도는 증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5. 영업세 개정 시범지역의 시범납세인이 제공한 대만/홍콩/마카오의 왕복 교통운송서비스 및 대만/홍콩/마카오에서 제공한 교통운송서비스는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시범납세인이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육로운송 방식으로 홍콩/마카오까지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도로운송증》을 구비한 직통 홍콩/마카오 운송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수로운송 방식으로 대만까지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대만해협 양안간 수로운송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대만해협 양안간 선박운행증》을 구비한 선박을 보유해야 한다. 수로운송 방식으로 홍콩/마카오까지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홍콩/마카오 노선 운영허가를 구비한 선박을 보유해야 한다. 항공운송 방식으로 상술 교통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항공 운송기업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그 경영범위에 “국제, 국내(홍콩/마카오)항공 여객/화물/우편 운송업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6. 장거리 여객, 정기운행 차량(고정노선, 고정시간에 따라 운영하고 고정 정류장에서 정차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육로운송 서비스), 지하철, 도시 경전철 서비스는 《교통운송업과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시범 유관사항의 규정》(재세[2011]111호)제1조 제(5)항 제2관 규정의 공공교통 운송서비스에 속한다. 시범납세인 중 일반납세인이 상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간이계세방법에 따라 납부증치세를 계산할 수 있다. 7. 선박대리서비스는 “화물운송 대리서비스”에 속하며, 국제선박 대리서비스는 국제화물 운송대리서비스에 속한다. 선박대리서비스란 화물 수하인, 송하인, 선박소유주, 선박임차인 또는 선박경영인의 위탁을 받아 위탁인의 명의 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적인 화물운송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탁인에게 화물운송 및 선박 수출입 항구, 인항(引航) 연락안배, 정박과 하역 등 유관 업무수속을 처리해주는 업무 활동을 뜻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시범 약간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1]133호)제4조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교통운송업과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약간 세수정책에 관한 보충통지》(재세[2012]53호)제3조와 상응하여 폐지한다. 8.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는 과도정책의 규정》(재세[2011]111호) 제2조 제(3)항 제(4)항 중 증치세 실제 세수부담은 납세인이 당기 실제 납부한 증치세 세액이 납세인이 당기 과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전체 대금과 가격외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9. 본 통지는 제3조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국가세무총국 2012년 12월 4일  |  | **关于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应税服务范围等若干税收政策的补充通知**财税〔2012〕86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总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根据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以下简称营改增）试点情况，经研究，现将有关税收政策通知如下： 　 一、建筑图纸审核服务、环境评估服务、医疗事故鉴定服务，按照“鉴证服务”征收增值税；代理记账服务按照“咨询服务”征收增值税；文印晒图服务按照“设计服务”征收增值税；组织安排会议或展览的服务按照“会议展览服务”征收增值税；港口设施经营人收取的港口设施保安费按照“港口码头服务”征收增值税；网站对非自有的网络游戏提供的网络运营服务按照“信息系统服务”征收增值税；出租车公司向出租车司机收取的管理费用，出租车属于出租车公司的，按照“陆路运输服务”征收增值税，出租车属于出租车司机的，不征收增值税。 　 二、对注册在天津市东疆保税港区内的试点纳税人提供的国内货物运输、仓储和装卸搬运服务，实行增值税即征即退政策。 　 三、自2012年11月1日起，对注册在平潭的试点纳税人从事离岸服务外包业务中提供的应税服务，免征增值税。 　 四、2013年12月31日之前，广播电影电视行政主管部门（包括中央、省、地市及县级）按照各自职能权限批准从事电影制片、发行、放映的电影集团公司（含成员企业）、电影制片厂及其他电影企业，属于试点纳税人的，对其转让电影版权免征增值税。 　 五、营改增试点地区的试点纳税人提供的往返台湾、香港、澳门的交通运输服务以及在台湾、香港、澳门提供的交通运输服务，适用增值税零税率。 　 试点纳税人适用增值税零税率，以陆路运输方式提供至香港、澳门的交通运输服务的，应当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证》并具有持《道路运输证》的直通港澳运输车辆；以水路运输方式提供至台湾的交通运输服务的，应当取得《台湾海峡两岸间水路运输许可证》并具有持《台湾海峡两岸间船舶营运证》的船舶；以水路运输方式提供至香港、澳门的交通运输服务的，应当具有获得港澳线路运营许可的船舶；以航空运输方式提供上述交通运输服务的，应当取得《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证》且其经营范围应当包括“国际、国内（含港澳）航空客货邮运输业务”。 　 六、长途客运、班车（指按固定路线、固定时间运营并在固定停靠站停靠的运送旅客的陆路运输服务）、地铁、城市轻轨服务属于《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事项的规定》（财税〔2011〕111号）第一条第（五）项第2款规定的公共交通运输服务。试点纳税人中的一般纳税人提供上述服务，可以选择按照简易计税方法计算缴纳增值税。 　 七、船舶代理服务属于“货物运输代理服务”，国际船舶代理服务属于国际货物运输代理服务。 　 船舶代理服务，是指接受货物收货人、发货人、船舶所有人、船舶承租人或船舶经营人的委托，以委托人的名义或者自己的名义，在不直接提供货物运输劳务情况下，为委托人办理货物运输以及船舶进出港口、联系安排引航、靠泊和装卸等相关业务手续的业务活动。《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若干税收政策的通知》（财税〔2011〕133号）第四条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若干税收政策的补充通知》（财税〔2012〕53号）第三条相应废止。 　 八、《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过渡政策的规定》（财税〔2011〕111号）第二条第（三）项、第（四）项中增值税实际税负是指，纳税人当期实际缴纳的增值税税额占纳税人当期提供应税服务取得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的比例。 　 九、本通知除第三条另有规定外，自2012年12月1日起执行。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2012年12月4日 |